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1. 17.

다. 상정일자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2.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지역경제과장 임강숙】

가. 제안이유

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 등록대상동물 월령 개정(안 제2조)
- 2) 인용 법 조항 수정(안 제8조 및 제9조)
- 3) 중성화한 길고양이 방사 장소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(안 제16조)
- 4)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조, 안 제23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동 조례개정안은 근거법인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,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·운영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.
- 개정안 제2조제2호는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2호¹⁾ 및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²⁾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 3개월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,
- 개정안 제8조제2항 중 “법 제15조제3항”을 “법 제15조제4항”으로, 제9조제2항 중 “법 제15조제6항”을 “법 제15조제7항”으로 각각 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임.
- 개정안 제16조제2항은 중성화한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포획장소 외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임.
-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‘길고양이 TNR’³⁾ 사업은 중성화한 길고양이를 원래 살던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. 그러나 도심 재개발 등 주변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중성화 이후 포획장소로의 방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고 이를 감안, 길고양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중성화 이후 다른 장소로의 방사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단서 조항의 추가는 동물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개정이라고 판단됨.

1)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동물의 보호, 유실·유기방지, 질병의 관리,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2)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(등록대상동물의 범위) 법 제2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.

3) 길고양이 TNR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(Trap)해 중성화(Neuter) 한 뒤 원래 살던 장소에 방사(Return)하는 방법을 뜻함.

○ 개정안 제23조는 반려견 놀이터(이하 “놀이터”라 한다)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되는 것으로, 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 제한 등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문을 열거하고 있고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8. 기타: 없음

【참고자료】

※ 마포구 반려견 등록 현황

등록 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
등록 반려견	1,887	5,947	2,044